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동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·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력 1명(6급 1명)을 감축하는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행정안전부,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정원대비표

2) 입법예고(2024. 11. 11. ~ 11. 18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총리령 제 호

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중 행정주사·공업주사·통계주사·환경주사·시설주사·전산주사·방송통신주사·보건주사·사회복지주사·공업연구사·환경연구사·시설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“49”를 “48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정원 대비 표

[별표 1]

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공무원 정원표(제8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• • 행정주사 · 공업주사 · 통계주사 · 환경주사 · 시설주사 · 전산주 사 · 방송통신주사 · 보건주사 · 사회복지주사 · 공업연구사 · 환 경연구사 · 시설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• •	• • 49 • •	• • 48 • •	-1